

##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KODEX 콩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콩-파생형]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 2012.02.01 ~ 2012.12.31
- 라.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증권

###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12.20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p>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1. 제 34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p> <p>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p> <p>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p>	<p>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1. 제 34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p> <p>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p> <p>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p>

			행
2012.12.20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1. 최초회 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 제1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3. 제2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 제2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1년간	1. 최초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이후의 회계기간 : 제1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3. 제2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 제2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1년간
2012.12.20	제36조 (운용 제한)	①-2-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금 보증한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①-2-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금 보증한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경우			의한 분담금 비용	12.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2012. 12. 20	제39조 (투자신 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2012. 12. 20	<p>②-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p> <p>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p> <p>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p> <p>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p> <p>5.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p> <p>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p> <p>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p> <p>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 비용</p> <p>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p> <p>10. 법 제 442 조에</p> <p>②-1. 증권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매매수수료</p> <p>2. 증권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결제비용</p> <p>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p> <p>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p> <p>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p> <p>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p> <p>7. 증권 등 자산(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정보비용</p> <p>8. 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p> <p>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p> <p>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p> <p>11.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p>		<p>11.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비용</p> <p>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③제 2 항 제 12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④제 3 항호에서 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p> <p>1. 건당 결제비용 (transaction fee)</p> <p>2. 보관비용(safe-keeping fee)</p> <p>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p>		

		collection 등)		
2012.12.20	<p>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2. 집합투자업자가 공의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하려는 경우</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p>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p>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2012. 12. 20	제41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생 락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의 익영업일	① 생 락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2. 12. 20	제48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①-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